| 전체세션 7 |

기본소득의 정의: 의미와 전망

이관형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장

전체세션7(이하 '세션7')은 폐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전체세션이다.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 세 사람이 발표한다. 루이즈 하그Louise Haagh는 기본소득의 '정의正義; justice'에 대해, 애니 밀러Annie Miller와 야마모리 토루山森 亮, Toru Yamamori는 기본소득의 '정의定義; definition'에 대해 발표한다. 하그는 원래 전체세션1(정치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속의 정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문 작성이 늦어지면서 마지막 세션으로 옮겨온다.

루이즈 하그의 발표제목은 "위기시대의 기본소득의 정의justice와 실현가능성"이다. 그는 기본소득이 정의로운 제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다.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는 해당 국가나 사회가 지닌, 발전적 거버넌스governance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정의로운 국가(사회)는 발전적 거버넌스 역량을 갖춘 국가(사회)이며, 그런 역량을 갖춘 국가(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현(도입)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즉, 정의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신자유주의가 외적으로 유입된 나라와 내부에서 태동한 나라 간에는 거버넌스 역량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역량이 높고 후자는 낮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한국과 노르딕 국가들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이다.

이 두 그룹(국가들)의 차이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서 드러

난다. 전자는 발 빠르고 적절한 대처로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였으나, 후자는 대처가 늦은데다가 적절성도 떨어져서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과 후유증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인상적인 것은 한국에 대한 후한 평가다.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자. "한국은 신자유주의를 외부에서 받아들인다. 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IMF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자유주의에 저항을 잘한다. 이후 오늘날까지 조세와 GDP가 동시에 성장한다. 특히 복지지출이 300% 이상 성장한다. 액수자체는 적지만 이런 빠르고 높은 성장율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다. 그 원인은 민주화 과정을 통해 획득한 높은 거버넌스 역량이다. 그 역량은 단적으로 펜데믹에서 드러난다. 락 다운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낮은 마이너스 성장(-6.8%, 영국은 –22.1%), 매우 빠른 고용회복(가장 빠른 2021년 3분기)을 기록한다. 고용보험 적용도 놀라운 수준이다."

그의 말을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노르딕국가와 대등한 수준의 복지국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큰 떡을 들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 암튼 우리나라에 대한 그의 평가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외삽된, 하그의 발표가 끝나고, 본래의 세션7이 시작된다. 기본소득의 정의를 둘러싼 애니 밀러의 제안과 야마모리 토루의 연구가 발표된다. 좌장은 칼 와이더키스트Karl Widerquist가 맡는다.

BIEN의 창립멤버인,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의 애니 밀러는 "기본소득 정의definition의 개정 필요성"을 주창해왔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주장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내놓는다.

먼저 그는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BIEN대회(2016년)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 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표> 기본소득의 정의변화

2016년 이전의 정의	2016년 이후의 정의
[A basic income is] "an income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출처: 애니 밀러의 발표문

위 정의에서 정기성Periodic과 현금성Cash Payment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granted'가 'delivered'로 바뀐데 있으며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필자의 오해가 아니라면) 'delivered'는 물건 배달하듯이 그저 '업무적/사무적으로' 전달한다는 뜻인 반면 'granted'는 공동체 등에서 '공인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듯하다.

정의 이외에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의 다섯 가지 특성들characteristics과 관련해서는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의 기존 규정들에 내용을 첨부·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개별성: 개인단위로 지급되며 예컨대 가구단위로 지급되지 않는다.(Individual: it is paid on an individual basis –and not, for instance to households.)"에서 'not to households'는 '가구에 속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또한 '커플'은 '가구'와는 또 다른 공동수급단위a common benefit unit이므로 양자를 모두 배제하고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담겨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별성: 커플 또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한다.(Individual: it is paid on an individual basis –and not, for instance, on the basis of a couple or to households.)"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편성: 자산조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Universal : It is paid to all, without means test.)"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내놓는다. '보편성universal'을 '획일성uniform'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보편성은 자격규정이되 자산조사 없이 어린이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급대상임(Universal: indicates who is eligible. It is paid to all, including children, without means test.)을 나타내는 규정이라는 점 등이다. 그는 보편성이 사전적ex ante 특성이며 자격은 기존 범주나 여건circumstances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세 번째로 "무조건성: 노동요구나 노동의사입증요구 없이 지급한다."와 관련하여 애니 밀러는 노동(work)이란 말의 모호성, 즉 남성중심적인 성격과 '임금노동work for pay'이란 말이 관용어로서 고착화되어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래서 이런 고정된 이미지와 남성 중심성,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무조건성의 본래적 의미인 '일체의 행동요건' 없이 지급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즉 "무조건성: 임금노동을 하거나 임금노동을 할 의사를 입증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전통적인 성(젠더) 역할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등의 일체의 행동 요건들 없이 지급된다. 즉 의무부여가 일체 없다.(Unconditional: It is paid without any behavioural requirements, for instance, to work

for pay or to demonstrate willingness to work for pay, to undertake volunteer work or to behave according to traditional gender roles. In other words, it is obligation-free.)

아울러 새로운 규정으로서 균일성Uniform을 추가하자고 주장한다. "균일성: 기본소득의 금액은 특정시점이나 특정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평등하며, 기존의 범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Uniform: the amount of a basic income is the same/equal for everyone within a given jurisdiction at a given time and does not vary according to pre-existing categories or circumstances.)

즉 기본소득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바꾸지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행동 요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균일한 현금 급여이다.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uniform,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requirement."

야마모리 토루는 기본소득의 정의definition와 관련하여 '역사기록학'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그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예를 들면 "1페니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오랜 질문을 또 다시 제기한다.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대신 그는 기본소득의 정의의 역사를 '최소기준치역치閾値; Threshold'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간략히 살핀다. 그에 의하면 전자는 기본소득' 후자는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s'이나 ',부負의 인두세negative poll tax', ',무조건적 소득unconditional income'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현재의 정의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기준치'가 기본소득의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와이더키스트는 2016년 BIEN대회에서, 'grant를 'deliver'로 바꾼 이유를 회고한다. 그에 의하면, 'grant'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낮은 사람에게 '하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 중립적 표현으로서 'deliver'를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그는 발표에 대해 (기본소득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의) 실제 정책적 도입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논쟁을 정의로 대체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는다.

세션 7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수준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기본소득 논의 안으로 들여오려는 노력은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현실화할 뻔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느끼는 온도차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전투를 직접 치러본 군대와 훈련만 많이 한 군대의 차이라고나 할까? 우리의 경험이 보다 원활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생각에 공감한, 어떤 센 언니 말씀하시길 '그 느무 영어가 …'